

##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 분석을 통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진단

#### 2021. 6.

#### ◀목 차 ▶

- 1. 검토 배경 / 1
- 2. [생계비] 現 최저임금 수준, 최저임금의 정책적 목표인 저임금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를 넘어 전체 생계비 중위값에 도달 / 2
- 3. [유사근로자 임금]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, 중위임금 대비 60%를 넘어 적정 수준의 상한선을 초과 / 4
- 4. [노동생산성] 최근 5년(2016~2020)간 노동생산성 증가율(0.8~17.2%)은 최저임금 인상률(53.9%)에 비해 현저히 낮음 / 7
- 5. [소득분배]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도 불구, 시장소득 기준으로 주요 소득분배지표 개선되지 않음 / 9
- 6. [지불능력] 최저임금 주요 지불 주체인 중소·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은 한계 상황 / 12
- 7. 결론 / 14

## 1 검토 배경

- 우리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대해 "근로자의 생계비, 유사 근로자의 임금,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"라고 명시
- 이러한 4가지 결정기준은 예시조항으로서, 반드시 동 기준만을 한정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냐, 해당 결정기준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주요한 참고 요소임을 고려하여, 각 항목별 분석을 통해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을 살펴보고자 함.
  - \* 최저임금법이 최저임금위원회를 합의제 의결기구로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제4조가 포괄적·예시적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, 위 규정의 고려요소를 최저임금액 결정 시 필수적으로 검토·반영하는 것으로 충분하고, 여기서 더 나아가 반드시 위 요소들을 통합한 산술식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이특정 계산값으로 도출되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(서울행정법원, 2020. 6.11.선고 2019구합79145).
- 이에 더해 최저임금법 제4조에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,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기준인 '지불능력' 관련 자료도함께 검토가 필요함.
- 최저임금 지급 주체의 지불능력이 감당하지 못하다면, 현실적으로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임금 결정의 기본원칙이기 때문임.

# 2

## [생계비] 現 최저임금 수준, 최저임금의 정책적 목표인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를 넘어 전체 생계비 중위값에 도달

#### ⇒ 최저임금 인상요인 없음

- ▶ 최저임금위원회의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결과에 따르면, 실태생계비 평균은 약 208만원으로 나타남. 근로자위원측은 이를 근 거로 現 최저임금이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므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, 이 생계비는 고소득자의 생계비까지 포함하여 평균한 값으로 최저임금 결정시 고려해야 하는 생계비 수치가 될 수 없음.
- ▶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보장이라는 최저임금의 취지를 고려하면 現 최저임금은 생계비 측면에서 인상요인 없음.
- 최저임금 심의 시 고려되어야 할 적정 생계비는 비혼 단신근로자 전체 생계비가 아닌 '최저임금 대상 계층의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'임.
-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생계비 산정 시 고소득층을 포함한 비혼 단신근로자 전체의 평균치가 아닌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기초로 하는 것이 타당
  - 최저임금위원회「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」보고서는 비혼 단신근로자 전체의 평균 실태생계비로 2,084,332원, 분위수별 평균 실태 생계비로 50%(생계비 중위수 100%)는 1,847,156원, 25%는 1,386,992원을 산출하여 제시
- ⇒ 이 중 전체 평균 실태생계비는 고소득층의 생계비까지 포함하여 평균한 것으로 최저임금 심의 시 참고하는 생계비에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생계비까지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.

#### < 최저임금 근로자와 소득이 유사한 계층의 생계비 활용 근거 >

- ①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저임금 근로자를 중위임금의 2/3(67%) 미만을 받는 임금근로자로 정의
- ❷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은 중위임금 대비 45~60% 수준이라는 것이 전반적 견해

- 2020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80만원(209시간 기준)은 저임금 비혼 단신 근로자의 실태 생계비를 이미 넘어섰으며,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 생계비 중위값에 근접한 수준에 도달
  - 2020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(209시간 기준)은 1,795,310원으로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중위값(1,847,156원)에 근접한 수준에 도달
  - 물론 이러한 생계비가 충분한 생계비라고 할 수는 없으나, 저임금 단신 근로자의 생계보장이라는 최저임금의 정책적 목표를 볼 때, 생계비 측면 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으며, 저임금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는 근로장려세제(EITC), 복지제도 등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.
- 생계비의 중감률 측면에서도 2020년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는 전년대비 4.6% 감소(중위수 100% 생계비는 전년대비 0.8% 감소)하여 최저임금 인상요인 없음.
  -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는 2019년 2,184,538원에서 2020년 2,084,332원 으로 4.6% 감소
  - 분위수 기준 50%(실태 생계비 중위수)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는 2019년 1,861,575원에서 2020년 1,847,156원으로 0.8% 감소

3

# [유사근로자 임금]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, 중위임금 대비 60%를 넘어 적정 수준의 상한선 초과

#### ⇒ 최저임금 인상요인 없음

- ▶ 유사근로자 임금과 비교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적정 수준의 상한선이라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%를 초과하였으며(최저임금 위원회 및 OECD 분석 기준), 우리나라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G7 국가 평균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준임. 따라서 유사근로자 임금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 없음.
- 2020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수준의 상한선(중위임금 대비 60%)을 초과(최저임금위원회 분석 기준)

#### <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(중위임금 대비 60%)에 대한 근거 >

- ① EU 노동조합총연맹(ETUC)은 최저임금의 주요 기준으로 중위임금의 60%를 제시
  - ⇒ 국가가 최저임금을 정하는 유럽 국가는 평균임금의 50% 또는 중위임금의 60% 이상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(ETUC, 2012.2)
- ②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에 대한 국제노동기구(ILO)의 명시적 기준은 없으나, 임금주도성장을 주창한 ILO 이상헌 고용정책국장도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 이 운영되기 위한 기준으로 중위임금 대비 45~60% 수준을 제시
  - ⇒ "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려면 중위임금 개념을 사용해야 한다.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려면 중위임금의 45~60% 정 도면 된다. 그 밑으로 가면 최저임금 의미가 없고, 더 높아도 의미가 없다" (언론 인터뷰, 2015.3).
- 2020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임금총액 중위값 대비 65.9%, 시간당 통상임금 중위값 대비 64.6% 수준(최저임금위원회, 2021)

< 표 1. 2020년 시간당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(중위값 기준)>

	고용년	-동부	통계청		
구분	「고용형태별 ;	근로실태조사」	「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」		
	시간당	최저임금	시간당	최저임금	
	통상임금	상대적 수준	임금총액	상대적 수준	
2020	13,295원	64.6%	13,034원	65.9%	

주 : 1인 이상 기준 / 2020년 최저임금(시급) 8,590원을 적용하여 비율 산정

자료: 최저임금위원회

- OECD 기준으로도 現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0%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이미 OECD 국가 중 최상위권(29개국 중 6번째)에 도달하였으며, 우리 산업 경쟁국(G7) 보다 높은 수준(2020년 추정치)
  - ※ 노동계는 유럽 국가에서 10인 이상 통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OECD 기준 우리 나라의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이 과대 추계 되었다고 주장하나, 최저임금 제도가 있는 OECD 29개국 중 10인 이상 통계를 활용하고 있는 국가는 11개국임.
    - ⇒ 종사상 지위 측면에서도 OECD 비교기준은 전일제 근로자(full-time employee) 이나, OECD는 우리나라를 전일제 상용 근로자 기준으로 분석하고 있어, 오히려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.
  - OECD 국제비교 방식을 활용하여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추정한 결과, 우리나라의 2020년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.4%로 추정
    - ※ OECD에 게재된 우리나라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62.6%로 최저임금 제도가 있는 OECD 회원국 29개국 중 5위(2019년 기준)
  - 이는 최저임금제도가 있는 OECD 29개국 중 6위이며, 세계시장에서 우리와 경쟁하는 G7 국가 평균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준
    - ※ 우리나라와 G7 국가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비교(%, 2020년 추정치) [한국] 62.4 vs [G7 평균] 48.6 [프랑스] 61.3 [영국] 57.1 [캐나다] 50.0 [독일] 48.1 [일본] 44.3 [미국] 30.7

< 표 2. OECD 국가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추정(2020) >

순위	국가명	중위임금 대비	순위	국가명	중위임금 대비	순위	국가명	중위임금 대비
1	콜롬비아	90.8%	11	룩셈부르크	54.7%	21	독일	48.1%
2	터키	73.9%	12	이스라엘	54.4%	22	네덜란드	47.7%
3	칠레	70.3%	13	호주	54.2%	23	벨기에	46.7%
4	뉴질랜드	68.8%	14	멕시코	52.5%	24	일본	44.3%
5	포르투갈	63.2%	15	슬로바키아	51.8%	25	라트비아	44.0%
6	한국	62.4%	16	스페인	51.7%	26	에스토니아	43.8%
7	슬로베니아	61.4%	17	캐나다	50.0%	27	체코	43.5%
8	프랑스	61.3%	18	헝가리	49.4%	28	아일랜드	42.6%
9	영국	57.1%	19	그리스	48.6%	29	미국	30.7%
10	폴란드	56.2%	20	리투아니아	48.6%	OECD평균(29개국)		54.2%

- 주 : 1. 순위는 임금총액 중위값(median)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높은 순
  - 2. 임금총액 중위값이 OECD 게재 기준 최근 5년(2015~2019)간 연평균 상승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승한다고 가정(단, 독일은 2016~2019년간 연평균 상승률 기준)
  - 3. 미국은 연방 최저임금(7.25달러) 기준으로 분석. 46개 주(50개 주, 1개 특별구 중 최저임금이 없는 5개 주 제외)의 최저임금 평균(2020년 기준 9.46달러) 적용 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40.0%로 상승하나, 순위변동 없음.
  - 4. 캐나다는 온타리오 주(州) 최저임금 기준(캐나다는 연방 최저임금이 없으며, 온타리오 주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온타리오 주를 기준으로 자료 발간)
  - 5. 2020년도 최저임금은 Eurostat, 국가별 정부 홈페이지 및 최저임금 고시 원문자료 참조

자료: OECD, Eurostat, 국가별 정부 홈페이지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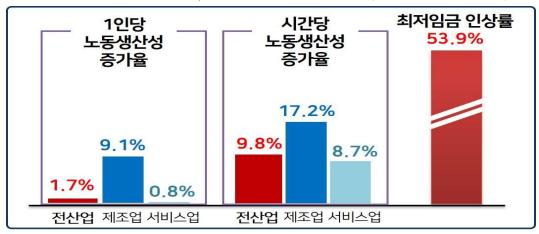
4

# [노동생산성] 최근 5년(2016~2020)간 노동생산성 증가율 (0.8~17.2%)은 최저임금 인상률(53.9%)에 비해 현저히 낮음

### ⇒ 최저임금 인상요인 없음

- ▶ 최근 5년(2016~2020)간 누적 최저임금 인상률은 53.9%에 달하는 반면, 동기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인당 기준 1.7%, 시간당 기준 9.8%에 불과.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가 다수 종사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노동생 산성 증가율은 1인당 기준 0.8%, 시간당 기준 8.7% 수준에 불과하여 최저임금인상률에 현저히 미달하고 있어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 없음.
- 최근 5년(2016~2020)간 최저임금은 53.9% 인상되었으나, 1인당 노동생산 성은 1.7%(시간당 노동생산성은 9.8%) 증가에 그쳐 최저임금 인상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31.7배(5.5배)에 달함.
- (최저임금 vs 노동생산성) 최근 5년(2016~2020)간 최저임금 인상률 53.9% 이나, 동 기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인당 1.7%, 시간당 9.8%에 불과
  - 최근 3년(2018~2020)간으로 살펴보더라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32.8%이나, 동 기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인당 0.8%, 시간당 5.0%에 불과
- **(서비스업 노동생산성)** 최저임금 근로자 대부분이 종사\*하는 서비스업에서 의 최근 5년(2016~2020)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인당 0.8%, 시간당 8.7%에 불과
  - \* 2020년 기준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의 83.8%는 서비스업에 종사(최저임금위원회, 2019.6)

< 그림 1. 최저임금 인상률, 노동생산성 증가율 비교(2015년 대비 2020년) >



※ 주석 및 자료는 <표 3> 과 동일

< 표 3. 노동생산성, 최저임금 지수 추이(불변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기준) >

	구분	2015	2016	2017	2018	2019	2020
1	전체	100.0	100.3	100.9	101.1	101.5	101.7
인	제조업	100.0	102.0	105.1	106.4	108.0	109.1
당	서비스업	100.0	100.2	99.7	100.3	101.1	100.8
시	전체	100.0	101.6	104.6	106.5	107.7	109.8
간	제조업	100.0	102.9	107.7	111.0	113.5	117.2
당	서비스업	100.0	101.5	103.5	105.7	107.1	108.7
최저임금		100.0	108.1	115.9	134.9	149.6	153.9

주: 1. 불변 부가가치 노동생산성(시간당, 1인당) 기준

자료 : 한국생산성본부; 최저임금위원회

<sup>2.</sup> 생산성본부는 부가가치 산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한국은행 국민계정통계 기준년 개편(2010년→2015년)을 반영하여 '2015년 노동생산성 = 100' 기준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해당 자료를 인용하여 2015=100 기준으로 분석

# 5 [소득분배]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도 불구, 시장소득 기준으로 주요 소득분배지표 개선되지 않음 ⇒ 최저임금 인상요인 없음

- ▶ 우리 최저임금은 2000년 1,600원에서 2017년 6,470원으로 연평균 8.6% 인상되었으며, 이는 동기간 전산업 명목임금상승률(4.8%)의 1.8배 수준. 그러나 해당기간 동안 소득분배는 오히려 악화
- ▶ 최저임금이 2년에 걸쳐 29.1% 급격하게 인상된 2018~2019년에도 최저임금과 같은 명목 개념의 소득분배(시장소득 기준)는 개선되지 못하고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개선됨. 이는 2018~2019년간 소득분배가 주로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조세제도, 공적 이전소득·지출에 의해 개선된 것으로 추정
- 우리 최저임금은 2000년 1,600원에서 2017년 6,470원으로 연평균 8.6% 인상 되어 동 기간 명목임금상승률의 약 2배에 달하나, 해당 기간 동안 소득 분배는 오히려 악화됨.
- 우리 최저임금은 2000년 1,600원에서 2017년 6,470원으로 연평균 8.6% 인상되었으며, 이는 동 기간 전산업 명목임금상승률(4.8%)의 1.8배 수준
- 최저임금인상률이 전산업 명목임금상승률의 1.8배에 달함에도 불구하고, 우리나라 소득분배 지표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(상승)\*되는 모습
  - \* 주요 소득분배지표 추이(도시 **2**인 이상 기구, 통계청)
    - < 지니계수 >

[시장소득 기준] 0.279('00)→ 0.298('05)→ 0.315('10)→ 0.305('15)→ 0.317('16) [처분가능소득 기준] 0.266('00)→ 0.281('05)→ 0.289('10)→ 0.269('15)→ 0.278('16)

< p90/p10 >

[시장소득 기준] 3.75('00) → 4.41('05) → 4.90('10) → 4.68('15) → 5.01('16) [처분가능소득 기준] 3.50('00) → 3.96('05) → 4.08('10) → 3.54('15) → 3.78('16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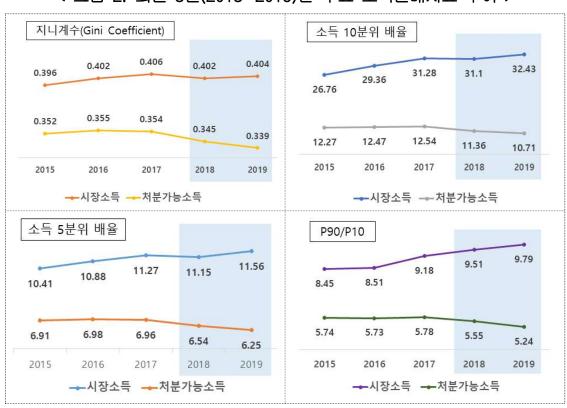
- ⇒ 2017년 이후 소득분배 관련 조사가 '가계동향조사'에서 '가계금융복지조사'로 바뀜에 따라 시계열 단절 발생(가계금융복지조사는 2011년 이후 자료만 소급하여 제공)
- 지난 2018~2019년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(29.1%)되었으나, 최저임금과 같은 명목 개념의 소득분배(시장소득 기준)는 개선되지 않음.

- 당시(2018~2019년) 시장소득 기준 주요 소득분배 지표는 큰 폭의 개선 효과를 보이지 못했으며 2019년에는 오히려 악화(상승)된 것으로 나타남.
  - 다만, 같은 기간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,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보다는 조세나 보조금 같은 이전 지출 증가 등 정부 정책의 결과로 추정됨.
    - ※ 시장소득 기준, 처분가능소득 기준 분배지표의 개념(통계청) [시장소득 기준] 가구가 직접 벌어들인 세전소득(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

사적이전소득의 합)을 기준으로 분배지표 산출

[처분가능소득 기준]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(공적연금, 기초연금, 사회수혜금, 세금환급급 등)을 더하고 공적이전지출(세금, 공적연금, 사회보험료 등)을 뺀소득(세후소득)을 기준으로 분배지표 산출

< 그림 2. 최근 5년(2015~2019)간 주요 소득분배지표 추이 >



자료 : 통계청, 국가통계포탈 소득분배지표

-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시장소득 기준 소득분배가 개선되지 못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협소한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같은 제도적 문제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등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상쇄되었기 때문으로 추정
  - 일반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위 계층의 임금이 더 크게 올라 소득분배가 개선되어야하나, 협소한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인해 최저 임금의 두배에 달하는 연봉을 받는 근로자까지도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
    -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한 산입범위 개편(2019년 시행)으로 우리 최저임 금의 산입범위는 점차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협소하며, 법 개정 이전에는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임금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괴리가 더욱 심했음.
  -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·저숙련 근로자 등 근로취약계층의 고용 유지·창출을 어렵게 만들어, 해당 계층의 소득 감소를 유발함으로써 시장소득 기준 소득분배를 개선시키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음.
    - 소득 5분위별 가구 근로소득을 살펴보면, 저소득층인 1분위 가구 근로소득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직후인 2018년 1~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13.3~36.8% 감소
      - ※ 소득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 증감율 추이(%, 전국 2인 이상, 전년동기비, 통계청) [2017년] △5.2('17.1q)→ 2.9('17.2q)→ 10.2('17.3q)→ 20.7('17.4q) [2018년] △13.3('18.1q)→ △15.9('18.2q)→ △22.6('18.3q)→ △36.8('18.4q) [2019년] △14.5('19.1q)→ △15.3('19.2q)→ △6.5('19.3q)→ 6.5('19.4q)



### [지불능력] 최저임금 주요 지불 주체인 중소·영세기업과 소상 공인의 지불 능력은 한계 상황

### ⇒ 최저임금 인상요인 없음

- ▶ 2020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이 역대 2번째(15.6%)로 높게 나타나고 일부 업종과 규모에서는 30~40%에 육박하는 등 현재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
- ▶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은 연간 영업이익이 3천만원(月 250만원) 미만 이며,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중소기업의 40.2%가 정상적인 임금 지급이 어렵다고 응답하여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중소·영세기 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 없음.
-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지속되면서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\*은 15.6%로 역대 2번째를 기록(역대 최고치는 2019년 16.5%)하였으며, 일부 업종과 규모에서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.
  - \* 전체 임금근로자 중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. 최저임금 수준이 사용자가 준수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지면 시장에서 수용성이 떨어져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아짐.
  - 최저임금 미만율이 숙박 및 음식점업 42.6%, 1~4인 사업장 36.3%에 달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해당 업종과 규모에서 최저임금이 사실상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의미(2020년 기준)
    - ※ '20년 주요 업종 및 규모별 최저임금 미만율(%, 경활부기조사 기준, 최저임금위원회)
      - ▶ 주요 업종별 : (숙박음식업) 42.6 (도소매업) 18.5 (농림어업) 51.3
      - ▶ 주요 규모별 : (1~4인) 36.3 (5~9인) 20.1 (10~29인) 13.5
-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54.0%는 연간 영업이익이 3천 만원(月 250만원) 미만이고,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10명 중 4명이 현재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  - 도소매업, 숙박음식점업 등 주요 11개 업종\*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4만여개 사업체(모집단 332만개사 중 4만개사 표본추출) 중 54.0%는 연간 영업

이익이 3천만원(月 250만원) 미만이고, 17.9%는 연간 영업이익이 1천만원 미만(중소벤처기업부, 2020.12)

\* 제조업, 건설업, 도·소매업, 숙박·음식점업, 정보·통신업, 부동산업, 전문·과학·기 술업, 시업시설·지원업, 교육서비스업, 예술·스포츠·여기업, 수리·기타서비스업

< 표 4. 영업이익 구간별 소상공인 분포(2019) >

구 분	1천만원 미만 1천만원~ 3천만원 미민		3천만원~ 5천만원 미만	5천만원 이상	
구성비	17.9%	36.1%	22.7%	23.3%	

자료: 중소벤처기업부, 2019년 기준 소상공인 실태조사, '20.12

- 소상공인 521명 중 43.8%는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(2021년 8,720원)에서도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(소상공인연합회, 2021.6).
-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,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현재 정상적인 임금 지급이 어렵다는 응답이 40.2%로 나타나 기업의 지불능력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 없음.
  -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(이자보상비율 100%미만) 중소기업이 52.8%로 나타남.
    - ※ 중소기업 중 이자보상비율 100% 미만 기업 비중 추이(%, 한국은행)
      41.6('16)→ 44.1('17)→ 47.2('18)→ 48.0('19)→ 52.8('20.上)
  - 중소기업 600개사 중 40.2%는 현재 정상적인 임금 지급이 어렵다고 응답(경총·중기중앙회, 2021.5)하여 기업의 지불능력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 없음.

## 7 결론

- 최저임금 결정기준 가운데 '생계비', '유사근로자 임금', '노동생산성', '소득 분배' 지표를 살펴본 결과, 2022년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찾아볼 수 없음.
  - (생계비) 2020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약 180만원(209시간 기준)은 최저임금 정책 대상이 되는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이미 넘어섰으며,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중위수 대비 100%(약 185만원)에 유사한 수준까지 도달
  - (유사근로자 임금) 유사근로자 임금과 비교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적정 수준의 상한선이라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%를 초과하였으며 (최저임금위원회 및 OECD 분석 기준), 우리나라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G7 국가 평균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준
  - (노동생산성) 최근 5년(2016~2020)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53.9%에 달하는 반면, 동기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인당 기준 1.7%, 시간당 기준 9.8%에 그침.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가 대부분 근무하는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인당 기준 0.8%, 시간당 기준 8.7% 수준에 불과
  - (소득분배) 2001~2017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(8.6%)은 동기간 전산업 명목임금상승률(4.8%)의 약 2배 수준이나 해당기간 동안 소득분배는 오히려 악화. 이후 최저임금이 2년에 걸쳐 29.1% 급격하게 인상된 2018~2019년에도 명목 개념의 소득분배(시장소득 기준)는 개선되지 못하고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만 개선되어, 2018~2019년간 소득분배가 주로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공적 이전소득·지출에 의해 개선된 것으로 추정
- '지불능력' 기준에서도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중소·영세기업과 소상 공인은 한계 상황인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 인상요인 없음.
  - (지불능력) 2020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이 역대 2번째(15.6%)로 높게 나타 나고 일부 업종과 규모에서는 30~40%에 육박.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은 연간 영업이익이 3천만원(月 250만원) 미만이며,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중소기업의 40.2%가 정상적인 임금 지급이 어렵다고 응답